HM Government

코로나19 유행 시 건설업과 기타 실외 작업의 안전 관리

사업자, 근로자,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안전 지침

2020년 8월 12일

HM Government

머리말

현재 영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중보건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상태다. 고용자와 근로자, 자영업자, 고객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점이다. 본 문서에는 현재와 같은 질병 대유행 상황에서 안전하게 일하는 동시에 고객을 안전하게 지키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된다)을 따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담겨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업무를 지속하거나 재개할 때, 이 자료가 현실성 있는 틀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부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서 여러분 모두가 바이러스를 확산시키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일하고 근로자와 방문객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강제로 일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와 고객, 공중보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다.

정부는 자원봉사를 재개하거나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각 단체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지침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근로자, 방문객과 동일하게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보호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본 지침은 영국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BEIS)가 업계와 노동조합, 산업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고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위임정부과 함께 영국 공중보건국(PHE), 영국 보건안전청(HSE)와의 협의를 거쳐 완성했다.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공중보건 관리는 각 지역에서 맡고 있으므로 본 지침은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지역 공중보건 및 안전 요건, 법률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른 지역 소재 산업체도 북아일랜드 행정부와 스코틀랜드 정부, 웨일스 정부가 작성한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본 문서는 앞으로 업데이트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버전은 2020년 8월 12자로 작성된 자료다. 업데이트는 https://www.gov.uk/workingsafel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safer.workplaces@beis.gov.uk로 보내기 바란다.

본 문서는 다양한 유형의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을 소개한 문서 중 하나로, 실외 업무 환경에서 일하거나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건설업과 기타 실외 작업'이란?

실외 작업에는 건설, 에너지 산업과 공익설비, 영농과 농업(계절별 임시 근로 포함), 임업, 폐기물 관리, 그 밖에 기반시설, 철도업, 도로 및 고속도로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HM Government

본 지침 사용법

본 문서에는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장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이 나와 있다. 일터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도 포함된다.

각 업체는 본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사업장의 크기와 종류, 조직, 운영, 관리, 규제 방식 등 각자의 특성에 따라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와 같은 조치가 방문객과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본 지침은 건강, 안전, 고용, 평등에 관한 모든 법적인 의무에 선행될 수 없다. 사업장 또는 고용주는 보호 대상자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 기존의 의무 사항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 본 지침은 강제성이 없으며, 그와 같은 기존 의무 사항을 준수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이다. 자사 근로자와 더불어 업무 대리 업체의 근로자, 도급업체 직원, 그 밖에 사람들을 고려하여 본 지침의 적용 방법을 마련하기 바란다.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과 안전에 관한 다른 위험요소를 평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코로나19 위해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해평가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HM Government

목 차

머리말	4
'건설업과 기타 실외 작업'이란?	4
본 지침 사용법	5
1. 위험성 확인	7
2. 출근 가능한 직원	12
3.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
4. 소비자, 방문객, 도급업체 관리	21
5. 업무 공간 청소	24
6. 개인보호장비(PPE)와 마스크	28
7. 인력 관리	32
8. 유입품과 유출품	36
추가 지침	37
부록	37

HM Government

1. 위험성 확인

목적: 모든 사업장이 코로나19 위해평가를 실시한다.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 모두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며, 특히 각 사업체는 근로자와 방문자에게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와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맞닥뜨릴 위험을 생각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고용주는 본 지침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코로나19 위험성 대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한편 통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용주의 결정과 실행하고자 하는 통제 조치는 모두 안전에 새로운 문제가 되거나 현재의 위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저감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업체 안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위해평가는 산더미 같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이 아니며,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찾아내는 일이다.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는 위해평가 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위해평가를 실시하면 필요한 일을 모두 완료했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영국 보건안전청(HSE)에서는 위해평가를 돕기 위한 인터랙티브 툴을 제공한다(https://www.hse.gov.uk/risk/assessment.htm).

고용주는 건강과 안전에 관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업무에 관한 근로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화를 나누는 한편,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야기함으로써 이러한 의무를 다할 수 있다.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일터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경우 근로자와 개별적인 논의를 통해 일터에 코로나19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볼 것을 권장한다. 특히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면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 고용주는 적절한 노동조합이 선정한 보건 및 안전 관련 대표자, 또는 그러한 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선정한 대표자와 함께 협의해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 대표를 직접 선정할 수는 없다.

이 과정이 최상의 효과를 발휘하면,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에 협력과 신뢰, 공동 문제해결이 바탕이 되는 조직문화가 형성된다. 일터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을 개발, 검토하는 과정은 다른 일반적인 업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고용주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문제에 항상 함께 대처해야 한다. 해결되지 않는 우려 사항은 아래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 제기 방법:

- ☐ 근로자 대표에게 연락한다.
-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에 연락한다.
- ☐ 아래 링크에 나온 HSE 양식을 작성한다: https://www.hse.gov.uk/contact/concerns.htm.
- ☐ HSE에 전화로 문의한다(0300 790 6787).

HM Government

1. 위험성 확인(계속)

HSE나 지역 당국 등 법률 집행기관에서는 공중보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공중보건 법률과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고용주를 찾아낸다. 해당 기관에는 업무 현장의 위험성 통제 수준이 개선되게끔 여러 가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건강 보호 규정(코로나바이러스, 제한)(영국)(No.3) 2020』에 따른 사업장 폐쇄도 그러한 조치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도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코로나19를 고려한 위해평가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위해평가는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건강 및 안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 때 집행당국이 시행할 수 있는 조치에는 고용주가 요건으로 정해진 기준을 지키도록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부터 개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명령서를 발부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집행 명령서가 발부된 후 심각한 위반 또는 미준수 행위가 발생하면 형사상 범죄로 간주되어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특수한 의무와 조건 등 법률 집행 시스템이 보다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권고나 통지서를 받은 고용주는 즉각 반응해야 하며, 해당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다수의 고용주가 정부 및 각 지역 기구와 협력하여 근로자와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영국이 벌이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참여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조사자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여 각 고용주가 필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역별 새로운 제한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고용주는 정부의 지시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지역별 추가 제한조치에 관한 정보는 본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HM Government

1.1 위험 관리

목적: 우선순위에 따라 예방 조치를 실시하여 위험을 실효성 있는 최소 범위로 줄인다.

고용주는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 업무 현장의 위험성을 실효성 있는 최저 수준으로 줄일 의무가 있다. 고용주는 업무 현장을 이용하는 근로자, 또는 해당 공간을 공유하는 도급업체와 반드시 협력하여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코로나19의 관점에서 이는 아래 조치를 순서대로 실시하여 근로자와 방문객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근로자와 방문객 모두 몸이 좋지 않으면 집에 머물고 사업장에 오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사업장에서 손을 자주 씻고 표면을 수시로 청소한다.
- 사업장과 업무 현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합당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8월 1일부터는 재택근무자 또는 코로나19 안전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는 전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그 대상에 해당된다. 사업장에서 업무가 실시되는 경우, 정부가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지켜지도록(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된다) 전원이 합당한 노력을 다 해야 한다. 8월 1일부터, 코로나19 안전 지침이 지켜지는 경우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사람도 일터로 복귀할 수 있다. 단,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가 실시되어야 한다.
- 특정 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체는 2미터 간격을 유지하거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해당 활동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추가적인 저감조치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손 씻기와 표면 청소 빈도를 더욱 늘린다.
  - 해당 활동의 시행 시간을 최대한 짧게 줄인다.
  - 사람들을 서로 분리할 수 있는 스크린이나 가림 막을 마련한다.
  - 가능하면 (정면을 바라보는 대신) 뒷면 또는 측면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 '팀 구성이나 파트너 고정' 방식을 채택하여 개인별 접촉하는 사람 수를 줄인다(개개인이 몇 사람과만 업무를 하도록 한다).
- 특정 활동을 재설계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활동이 사업체 운영을 지속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원 간 전파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한 저감조치를 모두 실시해야 한다.

HM Government

1.1 위험 관리 (계속)

· 사람들이 서로 과도하게 큰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음악이나 방송을 틀면 소리를 지를 수 있으므로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것, 특히 일반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볼륨을 높여서 재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목소리를 높이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특히 공기를 통한 전염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러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추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 고정된 업무 파트너 외에 더 많은 사람과 지속적으로 대면 접촉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경우, 해당 활동을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 평가 시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근로자가 있는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야 한다.

민간 가정에서 30인 이상이 모이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다(정원과 주택 야외 공간 포함). 사업체는 코로나19 안전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실내에 3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다. 산업계, 자선단체 또는 정치 단체, 공공기구의 주관으로 야외 공공 공간에서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업체의 주최로 3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다. 이 때 해당 업체는 코로나19 안전 지침에 따른 전파 위험 저감 조치를 적절히 마련하고 위해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그 밖에 야외 공간에서 실시되는 다른 모임은 인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본 문서에서 제시하는 권고는 위와 같은 과정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노동조합 등에서 세부 사업 분야에 맞게 마련된 권고 사항이 있으면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 사업장이 운영 중인 경우, 일터의 코로나19 위험성에 관한 평가를 이미 실시했을 것이다. 해당 경우 본 문서를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마련된 조치를 검토하여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건 아닌지, 업무 현장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새로운 위험요소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검토해야 한다.

HM Government

1.2 위해평가 결과 공유하기

위해평가 결과는 직원들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자사 웹 사이트에 결과를 공개한다(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이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을 적절히 평가했고 그 위험을 약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보여줄 것을 권장한다. 사업장 또는 업체 웹 사이트가 있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한다. 각 사업장은 본 지침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래 통지문에 서명 후 사업장에 게시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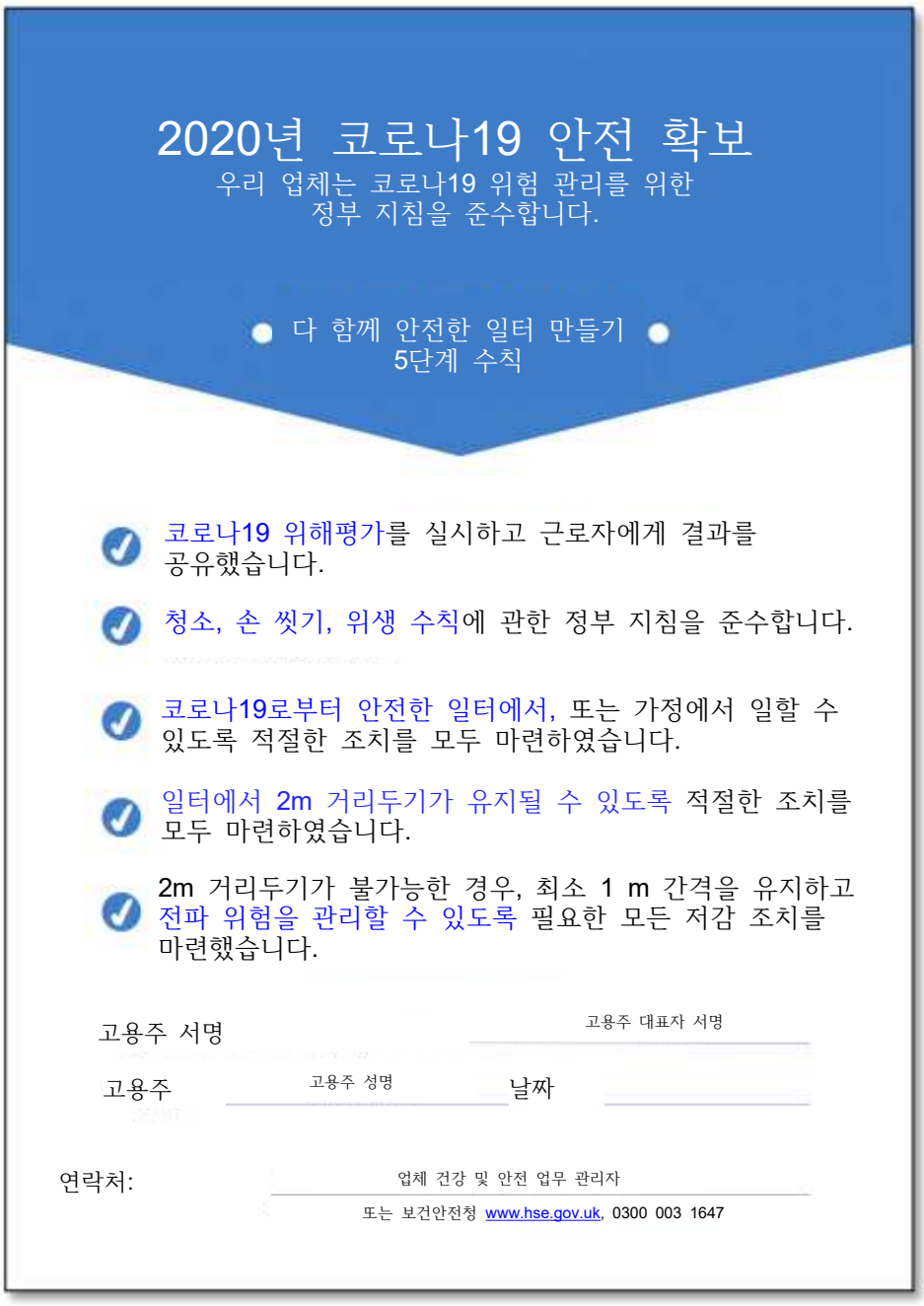

2020년 코로나19 안전 확보

우리 업체는 코로나19 위험 관리를 위한
정부 지침을 준수합니다.

다 함께 안전한 일터 만들기
5단계 수칙

- 코로나19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 청소, 손 씻기, 위생 수칙에 관한 정부 지침을 준수합니다.
-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모두 마련하였습니다.
- 일터에서 2m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모두 마련하였습니다.
- 2m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최소 1 m 간격을 유지하고 전파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저감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고용주 서명 _____ 고용주 대표자 서명

고용주 _____ 고용주 성명 날짜 _____

연락처: _____ 업체 건강 및 안전 업무 관리자

또는 보건안전청 www.hse.gov.uk, 0300 003 1647

2. 출근 가능한 직원

목적:

고용주는 업무 현장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집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업 및 기타 실외 작업은 대부분 근로자가 집에서 일을 할 수 없다.

바이러스를 통제하려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재택근무는 이 목적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나, 코로나19 안전 지침이 철저히 지켜진다면 확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용주는 직원 개개인의 출퇴근 거리와 돌봐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보호가 필요한 특성이 있는지 여부, 그 밖에 개인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8월 1일부터 안전하게 출근할 수 있는지 상의해야 한다.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은 더욱 주의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사업장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는 지역 교통에 발생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저감조치를 마련해야 한다(직원의 업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분산시키는 등). 고용주가 직원이 반드시 사업장으로 와서 일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코로나19에 대비한 사업장 위해평가에 해당 판단을 반영하고 본 지침을 준수하여 확산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업무 현장으로의 복귀 여부는 반드시 근로자와 의미 있는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 단체가 있는 경우 이들을 통해 논의한다). 의미 있는 협의란 일터로 복귀하는 것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터 복귀에 관하여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뜻한다. 논의 내용에는 복귀 시점과 복귀 단계, 시행 중인 위험 저감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터로 돌아오는 것을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일터로 출근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 ] 현장에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정한다.
- [ ] 인력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단계적인 출근 재개 계획을 수립한다.
- [ ] 재택근무 중인 직원의 복지를 모니터링하고, 다른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대다수가 현장에 출근하는 경우 이 점을 각별히 고려한다.
- [ ] 현장 외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복지와 현재 정신 건강 및 신체 건강, 개인 안전을 포함한 근무 상태를 확인한다.
- [ ] 집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업무 시스템에 원격 접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HM Government

2.1 고위험군 보호

목적: 감염 위험성이 높거나 감염 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한다.

영국 공중보건국이 작성한 보고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과 결과의 차이'에 따르면, 감염 위험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거나 감염 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위험군에 포함된다:

- 노년층 남성
- 체질량지수(BMI)가 높은 사람
- 당뇨 등 질환자
- 흑인, 아시아인, 또는 소수민족(BAME) 출신 중 일부 그룹

고용주는 위해 평가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8월 1일부터, 코로나19 안전 지침이 지켜지는 경우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사람도 일터로 복귀할 수 있다. 단,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가 실시되어야 한다.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사람이지만 재택근무가 불가능하여 출근하는 경우 가능하면 안전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는 업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이 지켜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사람은 임시로 다른 업무를 맡기거나 근무 패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위험요소와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보호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고려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출산 예정자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은 적절한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급 휴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사람과 함께 사는 직원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 ] 근로자의 정신 건강과 복지를 지원한다. 권고, 전화로 격려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 ]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사람 및 임상적으로 취약한 그룹에 관한 최신 지침을 참고한다.
- [ ] 임상적으로 극히 취약한 근로자가 업무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가장 안전한 업무를 맡기는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HM Government

2.2 자가격리자

목적: 현행 정부 지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집에 머무르라는 권고를 받은 사람은 직장에 출근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사람, 가족 또는 지원 버블 중에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 사람, 정부의 검사 및 추적 서비스에 따라 자가격리가 권고된 사람이 이러한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 중인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 고용주와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코로나19로 인한 병가 중 급여 규정 관련 현행 지침을 확인한다.
- ☐ 고열, 기침이나 후각 상실 증상이 새로 발생하여 지속되는 경우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경미한 수준이라도 반드시 증상이 시작된 시점부터 최소 10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근로자는 검사일로부터 최소 10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격리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난 경우 증상 발현일을 기준으로 10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본 요건은 7월 30일과 그 이후에 자가격리를 시작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 ☐ 증상이 나타난 사람, 증상이 나타난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에 관한 현행 지침을 확인한다.

2.3 직장 내 평등

목적: 차별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고용주는 본 지침 적용 시 근로자와 개개인의 제각기 다른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나이, 성별, 장애, 인종 또는 민족과 같은 보호 특성을 이유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차별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 고용주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와 출산자 또는 출산 예정자를 각별히 챙겨야 할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 각기 다른 보호 특성이 있는 근로자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고려해야 한다.
- ☐ 보호 특성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또는 현재 고려 중인 조치가 보호 특성이 있는 근로자에게 부적절하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히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소통해야 한다.
- ☐ 평등법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를 고려하여, 특별한 조치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 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부당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출산자 또는 출산 예정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평가한다.
- ☐ 조치를 마련할 때 특정 그룹에 다른 근로자보다 부당한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돌봐야 할 대상이 있는 사람, 특정 종교인 등이 그러한 대상에 포함된다.

3.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목적:

가능하면 근로자가 일터에 도착할 때, 퇴근할 때, 근무 중일 때, 현장 내에서 이동 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가능한 경우 업무 현장에서 반드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어야 한다.
- 특정 업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2미터 간격을 유지하거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해저감 조치와 함께 1미터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당 업무를 재설계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저감 조치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손 씻기, 표면 청소 빈도를 더 높인다.
  - 해당 업무 시간을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줄인다.
  - 사람들을 서로 분리할 수 있는 스크린이나 가림 막을 마련한다.
  - 가능하면 (정면을 바라보는 대신) 뒷면 또는 측면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 '팀 구성이나 파트너 고정' 방식을 채택하여 개인별 접촉하는 사람 수를 줄인다(개개인이 몇 사람과만 업무를 하도록 한다).
- 특정 업무를 재설계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체 운영을 지속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원 간 전파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한 저감조치를 모두 실시해야 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과 더불어 입구와 출구, 휴게 공간, 구내식당, 그와 비슷한 시설 등 사업장 내 모든 곳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가 각별히 주의하도록 당부해야 한다.

HM Government

3.1 출퇴근

목적: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도 가능한 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현장 도착 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 ] 일터로 들어오고 나가는 인원을 줄일 수 있도록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분산시킨다. 이 때 보호 특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 ] 주차 공간을 추가하거나 사람들이 걷거나 달려서, 자전거로 출근할 수 있도록 자전거 거치대 등의 시설을 추가한다.
- [ ] 통근용 미니버스 등 회사 차량에 동승하는 승객 수를 제한한다. 비워두는 좌석을 정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 [ ] 통행 혼잡을 줄인다. 예를 들어 가능한 경우 사업장 출입구를 늘린다.
- [ ] 입구와 출구에서 한 방향 통행만 이루어지도록 표시하고 안내한다.
- [ ] 입구와 출구에 손 씻는 시설을 마련하고(불가능한 경우 손 소독제 비치) 가능하면 키패드와 같은 접촉식 보안 장치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키패드나 통행증 등 보안 입출입 장치를 계속해서 사용하되 입구/출구에서 실시되는 절차를 전파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조정한다. 예를 들어 통행증 판독기를 수시로 닦고 직원들에게 통행증은 판독기와 접촉시키지 말고 근접 거리로 갖다 대도록 요청한다.
- [ ] 출퇴근에 관한 정부 지침을 확인한다.

HM Government

3.2 건물과 작업 현장 내 이동

목적: 작업 현장 내 이동 시 사회적 거리를 최대한 유지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건물 내부와 현장 내 이동을 자제하도록 하여 이동량을 줄인다. 예를 들어 일부 구역은 접근을 제한하거나 가능하면 전화나 전자기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 후에는 닦도록 한다.
- 직무 순환과 공용 장비를 줄인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가지 업무만 배정한다.
- 업무 현장 주변 통행로는 가능하면 한 방향으로만 통행하도록 한다.
- 바닥에 표시를 하거나 다른 물체 등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을 준수하도록 하고 현장 안팎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의 흐름을 통제한다.
- 현장 내 이동에 사용되는 차량의 승객 수를 줄인다. 예를 들어 셔틀버스 사용 시 차량 내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
- 현장은 작업 구역별로 분리하여 각기 다른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현실성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분리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접근 경로와 '안전 구역'을 정한다.
- 현장 오리엔테이션 시 참석자 수를 줄이고 가능하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실외 공간에서 진행한다.
- 복도, 엘리베이터, 회전문, 통행로 등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HM Government

3.3 한 곳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업장 안전 관리

목적: 한 곳에서 작업하는 사람들 간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

- 실외 작업은 한 자리에서 가만히 머물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일부 경우 그러한 작업이 실시될 수 있다.
- 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작업하는 경우, 작업 장소에서 사회적 거리가 최대한 유지되어야 한다.
- 작업 구역은 가능한 한 개인별로 할당되어야 한다. 한 구역을 공유해야 하는 경우, 공유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 작업 구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활동이 사업장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 판단하고 그렇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능한 저감조치를 모두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 ] 사업장 배치와 업무 과정을 검토하여 직원들이 서로 간격을 두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 [ ] 작업 구역 간 간격을 더 넓히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는 대신 옆으로, 또는 등을 돌려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 ] 작업 구역 간 간격을 더 넓히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람들을 서로 분리할 수 있도록 가림 막을 활용한다.
- [ ] 서로 밀접한 거리에서 함께 작업하는 경우 업무 파트너를 고정시킨다. 예를 들어 작업 변경이 불가능한 옮기기, 유지보수 작업 등 2인 1조로 실시해야 하는 작업 등이 포함된다.

HM Government

3.4 회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실외 회의

목적: 대면 회의로 인한 전파를 줄이고 회의 시에도 사회적 거리를 지킨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 ] 직접 만나는 회의를 피하고 원격 업무 툴을 활용한다.
- [ ] 회의에는 꼭 필요한 사람만 참석하도록 하고, 회의 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을 반드시 지킨다.
- [ ] 회의 시 전파 위험을 없앤다. 예를 들어 펜이나 서류, 기타 물건을 타인과 함께 쓰지 않는다.
- [ ] 회의실에 손 소독제를 제공한다.
- [ ] 가능하면 회의를 실외나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실시한다.
- [ ]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리는 장소에는 사회적 거리를 지킬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한다.

3.5 공용 구역

목적: 공용 구역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 ] 직원 휴게실과 식사 공간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휴식 시간을 분산하고, 휴게실에서도 사회적 거리가 지켜지도록 관리한다.
- [ ] 안전한 야외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 [ ] 원격 근무로 비어 있는 작업 구역 또는 건물에 공용 공간을 추가로 마련한다.
- [ ] 좌석과 테이블을 재배치하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대면 접촉을 줄인다.

HM Government

3.6 사고, 보안, 그 밖에 사건

목적: 사고 발생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 사고 발생과 같은 비상 상황으로 응급처치를 실시하거나 소방, 침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 비상 상황 시 다른 사람을 도운 경우, 상황 직후 손 씻기 등 위생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 사고 및 비상 대응 절차를 검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이 최대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코로나19로 운영 및 업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안에 발생하는 영향을 확인한다. 변경 후 새로운 보안상 위험요소가 생기거나 기존 위험요소가 바뀔 수 있고 그에 따른 저감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 ☐ 보안상 위험요소 관리에 관한 정부 지침을 확인한다.

4. 소비자, 방문객, 도급업체 관리

HM Government

4.1 접촉 관리

목적: 작업 현장의 불필요한 방문을 최소화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 ]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방문객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또는 도착하기 전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에 관한 현장 지침을 전달한다.
- [ ] 선택 가능한 경우 직접 방문 대신 원격 연결/업무를 권장한다.
- [ ] 한 번에 찾아오는 방문객 수를 제한한다.
- [ ] 사람 간 접촉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마주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필수 서비스와 도급업체 방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 ] 가능하면 모든 방문객의 방문 내역을 기록한다.
- [ ] 방문객은 현장에 들어올 때 손 소독제를 이용하거나 손을 씻도록 한다.

방문객 출입 기록 작성

HM Government

4.2 지침 제공 및 설명

목적: 사람들이 안전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일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지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고 근로자, 소비자, 방문객, 도급업체, 일반 시민이 작업장 근처에 머무는 동안 사회적 거리를 지키도록 알리고 돕는다.

· 실외 작업의 경우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장소에 현재 어떤 작업이 진행 중인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시물을 눈에 잘 띄게 걸어둘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 ] 어떤 작업이 진행 중인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물을 설치한다.
- [ ] 현장 입구에 시민들과 근로자 모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것을 상기시키는 게시물을 마련한다.
- [ ] 작업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상기할 수 있도록 현장 전역에 적절한 게시물을 설치한다.
- [ ] 코로나19 관련 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정하고, 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방문객 안내 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 ] 경찰과 직원이 신원 확인을 위해 요청하면 마스크를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방문객에게 알린다.
- [ ] 대기 줄을 서는 장소와 줄의 규모 등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내용인지 확인한다.

명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작업자의 유니폼에 안내 문구를 넣은 사례.

5. 업무 공간 청소

5.1 업무 재개 전

목적: 폐쇄했거나 일부만 운영되던 장소 또는 공간에 청소가 완료되고 업무가 재개될 준비를 마쳤는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 업무 재개 전에 폐쇄되어 있던 모든 장소나 일부 폐쇄됐던 곳을 대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한다.

· 업무 재개 전 청소 절차를 마련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한다.

HM Government

5.2 업무 현장 청결 유지

목적: 업무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오염된 표면 접촉을 통한 전파를 방지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 ] 작업 공간과 장비를 다음 사용 전에 일반적인 청소용품으로 수시로 청소한다.
- [ ] 양동이, 현장 장비, 제어 패널 등 접촉이 수시로 일어나는 물건과 표면은 자주 닦아내고 세척에 사용한 물건은 적절한 폐기 방안을 마련한다.
- [ ] 업무 종료 시 작업 공간을 청소하고 폐기물과 소지품을 작업 공간 밖으로 제거한다.
- [ ] 수공구, 제어장치, 기계, 장비는 사용 후 모두 위생 처리한다.
- [ ] 코로나19 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별도 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여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 [ ] 근로자와 방문객이 마스크와 개인보호장비(PPE)를 한 번 사용 후 폐기할 수 있는 일반 쓰레기통을 여분으로 제공한다. 마스크와 개인보호장비(PPE)를 포함한 개인 폐기물이나 산업 폐기물 처리에 관한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HM Government

5.3 위생 - 손 세척, 위생 시설, 화장실

목적: 근무시간에 모두가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 ] 손 씻는 시설을 임시로 마련하는 등 추가로 제공한다. 특히 대규모 현장과 현장 상주 인원이 많은 곳은 이러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 [ ] 안내판과 포스터를 통해 손 씻기 요령과 손 씻기 빈도를 늘려야 한다는 점,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고 기침이나 재채기는 휴지에 대고 하거나 휴지가 없으면 팔에 대고 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다.
- [ ] 위생 수칙을 지키도록 주기적으로 상기시키고 표지판을 마련한다.
- [ ] 손 씻는 곳과 함께 여러 장소에 손 소독제를 비치한다.
- [ ] 화장실 이용 수칙과 청소 지침을 마련하여 청결이 유지되고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도록 한다.
- [ ] 혼잡한 구역은 청소를 강화한다.
- [ ] 이동실 화장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 [ ] 쓰레기통을 늘리고 자주 비운다.
- [ ] 손 씻기 후 종이 타월이나 전기 드라이어 등 손을 말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 [ ] 가능한 경우 문을 열어두는 등 환기가 잘 되도록 관리한다.

HM Government

5.4 탈의실과 샤워실

목적: 탈의실과 샤워실에서의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샤워실과 탈의실이 필요한 경우, 샤워실, 로커 룸, 탈의실의 청결한 사용과 청소 지침을 마련하여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물품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도록 한다.
- 영업시간 중, 그리고 영업 종료 후 시설 전체의 주기적인 청소를 강화한다.

HM Government

5.5 장비, 재료, 폐기물, 현장 차량 취급

목적: 작업 현장에 유입되는 물건 및 현장 차량과의 접촉을 통한 확산을 줄인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설비, 도구, 차량 등 공용 장비의 접촉 부분은 사용 후 매번 세척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팔레트 트럭, 지게차 등이 이러한 장비에 포함될 수 있다.
- 상품이나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손 씻기를 장려하고, 손 씻는 시설을 추가로 제공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손 소독제를 제공한다.
- 근로자가 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차량은 정기적으로 세차한다.
- 재사용 가능한 운반용 상자는 정기적으로 세척한다.

6. 개인보호장비(PPE)와 마스크

HM Government

6. 개인보호장비 (PPE)와 마스크

PPE는 일터에서 건강과 안전상 위험요소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 안전 헬멧과 장갑, 보안경, 눈에 잘 띄는 의복, 안전 신발, 안전벨트, 차단/가림 막 등이 포함된다. 마스크와 같은 호흡기 보호 장비도 PPE에 해당한다.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위험요소로 인해 이미 업무 현장에서 PPE가 사용되는 경우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

본 문서의 첫 부분에 업무 현장에서 코로나19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 미터, 또는 2미터 간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저감 조치를 마련하고 1 미터까지 허용) 준수도 그러한 내용에 포함된다. PPE를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것 외에 추가하는 것은 코로나19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는 업무 현장에서 보통 맞닥뜨리는 위험요소와는 종류가 다른 위험요소이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위생, 구성원이 고정된 팀 또는 파트너와의 업무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

병원과 같은 임상시설이나 영국 공중보건청이 PPE 사용을 권장한 소수의 일부 사업체는 예외에 해당한다. 응급구조대원, 이민 업무 집행기관 직원 등이 그러한 예에 포함된다.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링크에 나온 권고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onavirus-코로나19-personal-protective-equipment-ppe-plan/코로나19-personalprotective-equipment-ppe-plan

및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코로나19-decontamination-in-non-healthcare-settings/코로나19-decontamination-in-non-healthcare-settings.

임상시설이나 코로나19 의심 환자 또는 확진자에 대응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 업무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PPE를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아니라면 PPE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보호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위해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해 평가로 PPE의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필요한 근로자에게 무료로 PPE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되는 모든 PPE는 근로자에게 잘 맞는 것이어야 한다.

HM Government

6.1 마스크

폐쇄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착용자와 주변 사람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

마스크는 매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착용할 수 있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가리면 되고, 의료보건 분야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나 호흡기와 같은 안면 마스크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분진이나 살포물질 등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PPE와도 종류가 다르다. 의료보건 분야 근로자, 분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산업 현장 근로자 등 작업 현장에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필요 시 안면 마스크를 포함한 PPE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고가 유지되어야 한다.

마스크는 접촉 시간을 최소화하거나 밀접한 거리에서 함께 일할 때 팀이나 파트너를 고정하는 것, 손 씻기와 표면 청소 빈도를 늘리는 것과 같은 다른 위험 관리 방안을 대체할 수 없다. 이러한 조치는 계속해서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최상의 방안으로 활용될 것이며, 고용주는 마스크를 건강 및 안전 평가 시 위해관리 수단으로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그리고 일부 실내 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평상시 잘 접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폐쇄된 공용 공간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사업장에서 마스크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적절히 착용하고 착용 전, 제거 전과 후에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

마스크 착용 시점과 착용 장소에 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

일부 경우 나이, 연령, 평등권 등의 사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HM Government

6.1 마스크 (계속)

사업장에서 마스크를 이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 마스크 착용 전, 벗기 전과 벗은 후에는 비누를 이용하여 20초간 손을 철저히 씻거나 손 세정제를 사용할 것.

· 마스크 착용 시 얼굴이나 마스크를 손으로 만지지 말 것. 손에 있던 세균으로 오염될 수 있다.

· 마스크에 습기가 발생하거나 손으로 마스크를 만진 경우 교체할 것.

· 손을 계속해서 자주 씻을 것.

· 마스크는 매일 교체하고 세척할 것.

· 세척 가능한 마스크는 제조사가 지시한 방법대로 세척할 것. 세척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적인 폐기물과 함께 조심해서 버릴 것.

·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지킬 것.

입술 움직임, 얼굴 표정,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 시 이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7. 인력 관리

HM Government

7.1 근무 형태와 감염 발생

7.1.1 근무 형태와 업무 그룹

목적: 개별 업무 그룹을 구성하고 근로자 간 접촉을 줄일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바꾼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 ] 가능하면 근로자를 팀이나 교대 근무조로 나누거나 개별 업무를 할당한다. 해당 팀이나 교대 조는 구성원을 고정하여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동일한 사람과만 접촉하도록 한다.
- [ ] 공용 도구, 재료, 업무 지시 등 직접 전달이 꼭 필요한 경우를 파악하고 놓고 가면 차후 수령하는 지점이나 전달 장소를 정하는 등 직접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 [ ] 업무상 이동이 필요하거나 집을 떠나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근로자는 함께 지내는 동료를 지정하여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사람과만 접촉하도록 한다.
- [ ] 작업시간 기록장치나 입구, 출구 등에 근로자가 몰릴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교대 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도록 한다.
- [ ] 고용주는 직원의 근무 일지를 21일간 임시 보관하고 검사 및 추적 서비스 요청 시 협조해야 한다. NHS 검사 및 추적국 요청 시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감염 클러스터와 발생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상세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7.1 근무 형태와 감염 발생

7.1.2 일터의 감염 발생

목적: 업무 현장에서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지침을 마련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 ] 위해평가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발생에 대비한 최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계획에는 지역 공중보건 당국에 주도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단일 연락지점(SPOC) 역할을 할 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 [ ] 업무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지역 공중보건부 건강보호팀에 연락하여 의심 사례를 보고해야 한다. 각 지역 공중보건국 건강보호팀의 연락처를 참고하기 바란다.
- [ ] 지역 공중보건국 건강보호팀이 감염 발생을 최종 확인한 경우, 증상이 나타난 직원의 세부 기록 제출과 연락처 확인 요청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직원의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해당 경우 고용주에게는 감염 관리 절차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를 토대로 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각 직원에게 연락하는 한편 예방 메시지를 강화하여 전달한다.

HM Government

7.2 업무 관련 이동

7.2.1 차량, 숙소, 방문

목적: 불필요한 출장을 피하고 여러 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사람들의 안전을 지킨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 ] 가능하면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이용한다. 불가능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 ] 가족이나 지원 버블 외에 같은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 수를 최소화한다. 출장 동료는 고정하고 가능하면 환기율을 높인다. 동승자와는 마주보고 앉지 않는다.
- [ ] 업무 종료 시, 또는 업무 인계 시 다음 업무 전에 공용 차량을 청소한다.
- [ ] 근로자가 집을 떠나 다른 장소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숙박 내역을 통합해서 기록하고 모든 숙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지켜지도록 한다.

근로자 간 간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좌석을 배치한다.

7.2 업무 관련 이동

7.2.2 다른 장소로 배송

목적: 시장, 고객이 있는 장소 등에 근로자가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 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 ] 다른 장소로 배송 시 대인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 [ ] 2인 1조로 배송이 실시되어야 하는 경우 구성원을 고정시킨다.
- [ ] 결제나 문서 교환 시 접촉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전자 결제를 이용하거나 전자 서명, 전자문서 교환 등을 활용한다.

HM Government

7.3 소통과 교육

7.3.1 업무 복귀

목적: 모든 근로자가 코로나19 관련 안전 절차를 숙지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 ] 업무 방식은 근로자의 이해를 돕고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수시로 전달한다.
- [ ] 업무 방식에 변경이 필요하면 기존에 마련된 소통 경로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 [ ]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기 전, 소통 방안과 교육 자료를 마련한다. 특히 새로 마련된 업무 절차가 있는 경우 이 점에 신경 쓴다.

7.3 소통과 교육

7.3.2 지속적인 소통과 게시물 활용

목적: 안전 조치의 시행 상황과 업데이트 여부를 모든 근로자가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 ] 업무 환경의 변화로 예기치 못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모니터링하고 파악하도록 한다(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그룹 등도 포함).
- [ ] 불확실한 일들이 많은 시기에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집중적으로 노력한다. 정부가 발행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정신건강 및 복지 지침을 참고하기 바란다.
- [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 시각 장애 등 보호 특성이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지침 내용은 이미지와 명확한 표현으로 단순하고 명쾌하게 전달한다.
- [ ] 대면 소통 대신 화이트보드, 게시판 등 시각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안전한 업무 수칙을 사실을 알린다.
- [ ] 공급업체, 소비자, 업계 단체가 서로 경험을 채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통 방식과 절차를 마련한다.

8. 유입품과 유출품

목적:

건축자재 보관 구역, 발송 구역 등과 같은 현장에서 물품이 들어오거나 사업장에서 물품이 나갈 때, 특히 그 양이 많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표면을 통한 전파를 방지한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

- [ ] 물품 수령 및 배송품 수거 지점, 절차, 게시판, 표지 방식을 개선한다.
- [ ] 입출입 보안 절차 시, 작업장, 창고에서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전자 사전 예약으로 이용 가능한 물품은 비접촉 방식으로 배송한다.
- [ ] 배송 빈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한 번에 더 많은 양을 주문한다.
- [ ] 가능하고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물품의 적재와 하역을 한 사람이 담당하도록 한다.
- [ ] 물품 적재 시 한 명 이상이 필요한 경우 가능하면 고정된 구성원끼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 [ ] 필요한 경우 다른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운전자가 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 안전에 해가 되거나 현행 안전 작업 수칙에 위배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는 가급적 차를 운전해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차량에 머무르도록 한다.